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6. 6. 2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인구 10만 명 미만인 군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가. 시·도

구분	의회사무처장	국장	과장 또는 담당관	담당관
특별시	1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도	2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2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 공무원

비고

-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를 제외한 시·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시·군·구

구분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시·군·구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비고: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